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I. 제1호가목 중 “잣”을 “잣,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2)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제8호”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5호”로 한다.

별표 7 I. 제14호 중 “제7호저목”을 “제7호처목”으로 한다.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라목4)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광고를 한 경우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품목 제조 정지 2개월	품목 제조 정지 3개월
--	-----------------	-----------------	-----------------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라목4)거)를 너)로 하고, 같은 목에 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	-------------	-------------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라목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	-------------	-------------

별표 7 II.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다목4)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 5일	영업정지 1개월
--	------------	--------------	-------------

별표 7 II.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다목4)카)를 타)로 하며, 같은 목에 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	------------	-------------	-------------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다목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	------------	-------------	-------------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6조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I.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2.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라목6) 및 같은 별표 7 II.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다목6)의 개정규정: 2026년 11월 27일

제2조(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I.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